

[사 건 명] 행심 2019 - 85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피청구인이 2019. 5.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을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1시간』 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2019. 3월 말부터 1개월 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6학년 0반 4명, 6학년 0반 3명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지칭하는 ‘달\*\*\*’ 라는 단어를 만들어 ‘니 여친 달\*\*\*, 지금 ~ 안하면 넌 달\*\*\*야’ 라고 노래를 부르며 피해학생을 놀림.
- 나. 2019. 4. 26.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2019. 4. 29. 청구인 측도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 다. 피청구인은 2019. 5.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를 개최하여,
- 라. 2019. 5. 22. 청구인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1시간』 처분 조치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1시간』 처분 조치함.
- 마. 2019. 6.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같은 반으로 피해학생에게 학기 초부터 흉기(칼)로 찌르려는 위협과 폭행, 욕설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던 중 유\*\* 학생이 만든 ‘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음.
- 나. 청구인은 학교폭력 신고 전 14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피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쓰고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학생의 부모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7명의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음.
- 다. 피해학생은 청구인에게 커터칼로 위협을 하였고, 책을 집어던져 어깨를 맞기도 하였으며,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는 피해학생이 수업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청구인에게 시키는 등 공포감과 모욕감을 주었음. 또한 청구인이 친구에게 귓속말 하는 것을 보고 남자끼리

키스하고 사귀다고 놀려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음.

라. 피청구인은 가해학생 7명 중 2명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4명에게는 경미한 서면사과 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동일한 사안에 처분 결정이 다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불합리한 조치임.

마. 학폭위 위원들의 아들이 이 사건 가해학생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비록 학폭위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학폭위 위원들의 아들과 같은 반에 속해 있는 학생은 모두 경미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것은 사전 모의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임.

바. ‘달\*\*\*’ 라는 단어는 단지 별명임에 불구하고,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경미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과중한 처분을 하고, 반면 ‘달루즈미’ 라는 단어를 만든 학생에게는 경미한 서면사과 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 피청구인은 가해학생의 조치는 위원들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학폭위에 경찰위원 2명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심리상담교사로부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담교사도 청구인이 반성하는 모습에 감동하였다고 하였으며, 학폭위에서 청구인의 모친이 진술한 내용을 청구인의 반성 정도에 적용한 것은 불합리함.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의 권한이 아니라 위원들의 결정사항임.

나. 청구인은 기본적 판단요소에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측면에서는 타 학생과 판단은 같았으나, 청구인 측이 학폭위에서 ‘재준이가 사과를 다시 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받아야 한다. 먼저 피해학생이 사과하면 괜찮다. 피해학생 측의 계속된 괴롭힘으로 생긴 문제이다’라고 주장하여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와 화해정도에서 낮은 처분을 받아 조치 결과에 차이가 났음.

다. 2019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번 사안으로 처음 개최되었으며, 개최 이전 학폭위 위원들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은 없었으며, 학폭위 구성인원은 총 9인으로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2명, 경찰위원 2명으로 되어 있음.

라. 학폭위에서는 진술서와 보고서, 관련 학생들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의 가·피해 정도를 파악했으며,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와 부가적 판단요소(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진료확인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관련학생들이 작성한 학교폭력 확인서, 행정심판에서의 구술심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반 학생이고, 2019. 3월 말부터 1개월 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6학년 0반 4명, 6학년 0반 3명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지칭하는 ‘달\*\*\*’ 라는 단어를 만들어 ‘니 여친 달\*\*\*, 지금 ~ 안하면 넌 달\*\*\*야’ 라고 노래를 부르며 피해학생을 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학생이 실과수업시간에 커터칼 칼날을 빼서 스스로 손목에 자해한 후 청구인학생에게 칼날을 들이대며 “너도 찢러줄까” 라고 말한 사실, 피해학생이 사회수업시간 종료 후 책을 던져 청구인의 어깨에 맞은 사실, 청구인이 친구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학생이 남자끼리 키스했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놀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3. 판단

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

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의 별명을 부르면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피해학생이 큰 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따돌림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을 하였으며, 학폭위 회의록을 보면, 학폭위에서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을 결정할 때,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3호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6학년 0반 학생 4명에 대한 조치는 ‘서면 사과’에 그친 점, 청구인도 피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하였고,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한 점, 청구인과 피해학생 사이에 감정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처분은 다른 사례 및 관련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에 반하여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폭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